

울산남부경찰서

제 2022-01341 호

2022. 9. 13.

수신 : 유다영 귀하

제목 :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등·불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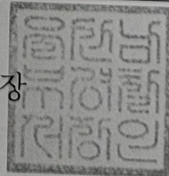
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시	2022. 7. 18.	사건번호	2022-005447
죄명	강제추행		
결정일	2022. 9. 13.		
결정종류	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유	별지와 같음		
담당팀장	여성청소년수사4팀 경위 권택정	☎	052-208-0708

※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
 - 관할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
-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 각급법원에 신청,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구조
 - 여성 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아동보호 전문기관(1577-1391) 등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출장소)
 -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손해배상청구,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
 - 피해자나 가족,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
-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청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울산남부경찰서장





【별지】

【죄 명】

- 강제추행

【결정종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피의자 김00은 2022. 7. 9. 02:00경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주무른 후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 고소인은 작은 방에서 아기를 재우고 있었는데 거실에 있던 피의자가 갑자기 작은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입맞춤을 하며 혀를 집어넣었고 가슴을 주무른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당시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항을 하지 못하다가 음부를 만질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피의자의 손을 뿌리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반하여 피의자는 거실 바닥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시간이 늦어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고소인에게 인사를 하러 작은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있는 고소인을 깨웠다. 이때 고소인이 자신을 바라보며 양팔을 벌리기에 “나 오라고?”라고 물었으며 이에 고소인이 고개를 끄덕이기에 “왜?”라고 대답하며 얼굴을 들이밀자 고소인이 양팔로 자신의 목을 감싸 힘을 주기에 자신도 모르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고 이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의 어떠한 거부 반응도 없었고 음부를 만질 때 아차 싶은 마음에 자신이 먼저 손을 빼며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위의 강제성에 대해



부인한다.

- 피의자의 당시 상황 및 전후 사정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전후 사정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인 CCTV 영상과 매우 일치하는 등 피의자의 신빙성을 떨어트릴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 범행 장면을 목격한 자가 없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등 영상이 없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심의신청 방법

<결정 종류 안내>

-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심의신청 방법>

-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